

고시반관리및운영규정(폐지)

제 정	:	2006. 9. 1
개 정	:	2012. 6. 1
폐 지	:	2022. 12. 2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사고력과 전문지식 및 높은 윤리의식을 겸비한 고급공무원 양성을 위한 각종 국가고시 준비생들의 면학과 수험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금강대학교 고시반(이하 “고시반”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고시반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고시로 편성·운영한다.

제3조(고시반운영위원회) 고시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시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시반 관리 및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고시반 운영규정의 개정(고시반 추가, 폐쇄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고시반의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기획관리처장, 통상행정학부장, 행정학전공주임교수의 당연직 내부위원과 3인 이내의 위촉직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학전공주임교수를 간사위원으로 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고시반지도교수) ①고시반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수험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고시반지도교수를 둔다.

②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행정학전공주임교수가 겸임 한다.

③지도교수는 각 고시반 입실자의 선발(시험문제 출제 및 선정), 수험 및 생활 지도, 상벌 및 퇴반, 그리고 서울 분원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사무직원) ①고시반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 1명과 조교 1명을 둔다.

②직원은 학생지원처나 취업정보실 직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한다.

제7조(입반자격) ①고시반에 입반할 수 있는 자는 이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단, 행정 및 외무고시 1차 합격자는 이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매학기 입반시험에 합격한 자
 2. 기타 지도교수가 자격을 인정한 자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반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 중인 자
 2. 기타 입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③입반자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반시험) ①고시반 입반시험은 년 2회로 8월과 익년 2월에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 1과 같이 한다.

1. 모의PSAT(고등고시 1차 시험)
2. 모의토익
3. 면접시험

②각 시험과목의 반영비율 및 입반시험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PSAT와 토익시험 각각 50%

2. 면접에서는 수험동기 및 학점, 직렬 등을 고려하여 고시반원으로서 합당 여부만 판정한다.

3. 다만, PSAT 합격자나 정규토익성적 800점 이상인 경우 입반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입반기간) 고시반 입반기간은 고시반 입반시험 당해연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 입반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신분유지) 입반자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모의고사에 응시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해야 하며, 다음의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야 고시반원으로서의 신분유지가 가능하다.

제11조(퇴반) 입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고시반지도교수가 퇴반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상습음주자, 소란행위자, 풍기문란자 등)
2. 장기무단 결실자
3. 학업성과 학습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
4. 학칙에 중대한 위반을 한 자
5. 행정 및 외무고시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않은 자
6. 고시반 지도교수의 면담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
7.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고시반 전용시설 이용) ①고시반 입반자를 위한 전용시설로서 이 대학교 내에 열람실, 자료실 및 세미나실 등을 설치 운영한다.

②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열람실 : 24시간
2. 자료실 및 세미나실 : 오전 9시 - 오후 11:55

③시설의 사용과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시설 내에서는 항상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시설과 각종 자료는 타 반원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3. 고시반원 이외의 사람은 전용시설 내에 무단으로 출입시킬 수 없다.
 4. 열람실은 지정좌석제로 한다(매학기 입반 전에 입반성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고유 좌석을 부여함).
 5. 자료실 내의 도서 대출은 할 수 없다.
 6. 최종 퇴실자는 항상 전용시설 내 전원기기의 전원을 제거한 후 출입문을 잠근다.
- ④전용시설 이용 및 고시반 생활에 따른 별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NO	별점내용	별점
1	전용시설내에서 폭행, 절도, 방화행위를 한 경우	퇴반(10점)
2	외부인에게 숙식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퇴반(10점)
3	전용시설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흡연행위	퇴반(10점)
4	고의로 시설물의 손상 및 파손하는 행위	퇴반(10점)
5	지정열람실내 무단결실을 6회 이상 한 경우	퇴반(10점)
6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무단결석을 3회 이상 한 경우 (단, 출결은 프로그램 시작 5분 전에 실시하며, 3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간주한다. 또 불참시 사유서 제출을 요한다.)	퇴반(10점)
7	고시반 모의고사 및 위탁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퇴반(10점)
8	고시반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경우	5점
9	전용시설열쇠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점
10	지정열람실내 무단결실자(3회 이상)	5점
11	전용시설내 위험물 반입 사용행위	5점
12	전용시설의 이용시간을 허락 없이 어기는 행위	2점
13	지정열람실내 불결, 정리정돈 불량	2점
14	전용시설내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2점
15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관계자 판단
<p>※ 1. 1학기당 별점 10점 이상이면 즉시 퇴반 처분 2. 1학기당 별점 5점 이상이면 경고처분 3. 1학기당 경고처분 2회 이상이면 퇴반 처분 단, 지도교수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퇴반 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p> <p>※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 사이(토요일 정오에서 일요일은 제외)에 1시간 이상 지정좌석에 결실이 지속되는 경우 지도교수나 조교는 무단결실로 판단한다 (출결확인은 일 2회 무작위로 실시). 단, 수업이나 식사시간, 그리고 지정좌석 이탈에 대해 지도교수 승인을 받는 등 결실사유가 이유 있는 경우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함.</p>		

제13조(장학금) ①고시반 입반자의 학습분위기 진작을 위하여 고시전문학원의 위탁교육비 및 숙소경비, 도서구입비 등에 대하여 장학금지급규정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액에 대한 사항은 매년 예산배정에 따라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부터 폐지한다.

서 약 서

성 명 (한 자)	()	학 부 (전 공)	
		학 번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집 : 핸드폰 :
입반일자	년 월 일		

위 본인은 고시반 입반에 있어서 관리 및 운영 수칙을 준수함은 물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고시반 반원으로서 면학에 정진하고 품위를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성 명 : (인)

금강대학교 총장 귀하